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률안

- 상공자원부 -

상공자원부는 지난 9월 14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률안을 작성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통하여 사업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 및 정부관리기금을 통합하여 교통관련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등으로 재정체계를 단순화 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따라 상공자원부는 현재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 이상 5개 기금과 일반 회계의 에너지 및 자원부문 사업비 및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재원을 통합, 특별회계로 단일화 하기로 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률안을 작성한 것이다.

에너지 및 자원부문 5개 기금 및 재정에 의한 연간 사업비 운용규모는 '93. 예산기준으로 13,502억원이며, 석유사업기금이 9,963억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지원형태는 융자 4,845억원 (35.9%), 보조 4,327억원 (31.4%), 투자 또는 출자 2,259억원 (16.7%), 그리고 유가완충등이 2,122억원 (16.0%)으로 되어 있다.

5개 기금의 92년말 자산액은 47,042억원이며, 그 중 석유사업기금의 자산은 42,755억원이고,

- 자산의 보유형태는 정부투자기관, 기업 또는 민간에 융자한 금액이 24,557억원, 석유비축자산 등 현물자산과 투자자산이 12,204억원, 그리고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예의 예탁금이 8,670억원이고 기타는 예금, 현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이번 상공자원부에 의하여 성안된 특별회계법안의 주요골자는

-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 특별회계의 세입은 석유 등 수입에너지 자원에 부과하는 부과금, 석탄생산부과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회계에 의한 출자기관의 출자수입 등으로 하며, 특히 특별회계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방카씨유 부가가치세액과 석유특별소비세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일반회계전입금과 차입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특별회계의 세출은 에너지·자원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관련기관 또는 기업 등에 대한 보조, 출연, 출자 등으로 하고 있는데 석유비축, 송유관, LNG사업, 유전개발을 비롯한 국내외자원개발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에너지 절약시설설치,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석탄산업합리화, 석탄가격안정사업 등 과거 5개 에너지 및 자원관련기금에서 담당하던 사업과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에너지 및 자원부문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 이와함께 특별회계제도로는 대처가 곤란한 유가완충사업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용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내에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5개 기금의 용자채권 등을 승계하며,
- 에너지 및 자원부문 5개기금의 폐지에 따라 5개기금의 관련근거법인 석유사업법, 석탄산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상공자원부는 오는 95년 1월 1일로 예정된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로의 전환과 관련, 효율적인 석유비축사업을 위하여 석유사업기금 소관 석유비축시설과 비축유를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출자하는 문제를 비롯 석유사업기금의 출자회사인 대한송유관공사의 향후 법적위상 문제 등 과거 5개 기금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지원되어 왔던 에너지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특별회계 제도에 맞도록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률안은 관계부처협의와 당정협의, 그리고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되면 '95년도 예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자원부문 예산 및 5개 기금 현황

1. 에너지·자원부문 사업비 총괄 (재정 및 기금)

- 에너지·자원부문의 연간사업비 운용규모는 '93기준 13,502억원
- 재원분담은 재정 14.4%, 5개기금 85.6%으로
- 주요 재원별로는 석유사업기금 73.8%, 석탄 육성기금 9.1%, 재특 7.6%, 일반회계 6.8% 등임.

(단위 : 억원)

		석 탄	석유가스	에너지 절 약	국 내 의 자원개발	전 력	유가완충	기 타	계
기 금	석 유 사 업 기 금	2,790	2,569	1,663	819	-	2,122		9,963
	석 탄 육 성 기 금	1,232	-	-	-	-	-		1,232
	석 탄 안 정 기 금	46	-	-	-	-	-	25	71*
	에 너 지 합 리 화 기 금	-	-	180	-	-	-		180*
	해 외 자 원 개 발 기 금	-	-	-	37	-	-	72	109*
소 계		4,068	2,569	1,843	856	-	2,122	97	11,555
재 정	일 반 회 계	560	-	177	97	89	-		923 (1,024)**
	재 정 투 용 자 특 별 회 계	719	170	30	80	25	-		1,024
	소 계	1,279	170	207	177	114	-	-	1,947
합 계 (%)		5,346	2,739	2,050	1,033	114	2,122	97	13,502

※ 주) * 석탄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및 해외자원개발기금은 석유사업기금 등으로 부터 전대분 제외.
전대분 포함시 각각 1,080억원, 210억원 및 350억원

** ()는 인건비·행정비 포함시 일반회계예산

○ 지원형태별 구분

(단위 : 억원)

계	용 자	보 조	투자·출자	유가완충	기 타
13,502 (100%)	4,845 (35.9%)	4,237 (31.4%)	2,259 (16.7%)	2,122 (15.7%)	40 (0.3%)

2. 에너지자원부문 5개기금 현황

- 석유사업기금이 전체 5개기금 운용규모의 86.2%, 자산규모의 90.9%로 대종을 이루고 있음.

○ 정부관리기금 2개(석유사업기금, 석탄육성기금)와 민간기금 3개가 있으며,

(단위 : 억원)

	기 금 명 (설치년월)	근 거 법 관 리 주 체	재 원 조 성	주요용도(기능)	93운용규모 (전대금포함)	'92말 자산액 (총조성액)
상공자원부 (석유개발공사)						
석탄육성 기금 ('77.10)	석탄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석탄비축 하계저탄용자 연탄공장 시설 현대화 	1,232	2,943 (3,213)	
	상공자원부 (석탄공사)					
석탄안정 기금 ('87.1)	석탄산업법 석탄합리화 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생산시 부과금 (100원/톤) 정부출연 석탄회관수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광지원 광원자녀학자금 석탄품질검사 	71 (1,080)	107 (2,877)	

(단위 : 억원)

	기금명 (설치년월)	근거법	재원조성	주요용도(기능)	'93운용규모 (전대금포함)	'92말 자산액 (총조성액)
		관리주체				
민 간 기 금	해외자원 개발기금 ('79.5)	해외자원 개발사업법	• 정부출연	• 해외자원개발 용자(석유제외)	109 (350)	1,040 (1,040)
		광업진흥 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80.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정부출연	• 에너지절약사업	180 (210)	197 (211)
		에너지관리공단				
합 계					11,555	47,042 (69,048)

주) 각 기금 모두 재원조성에 기금용자원리금 회수 포함

3. 기금 보유자산현황

- 5개기금 보유자산액은 '92말 기준 47,042억원
으로
- 융자금 미회수잔액(장·단기 대여금)이
24,557억원(52.2%)
- 석유비축시설·비축유, 저탄장·비축탄 등 현

- 물자산이 11,056억원(23.5%)
- 송유관공사 등에 대한 출자 및 기타 투자자
산이 1,148억원(2.4%)
- 현금·예금·예탁금 등 당좌자산이 10,281억
원(21.9%)임
(재특예탁 8,670억원 포함)

(단위 : 억원)

	자 산 액	내 역			
		융 자 잔 액	현 물 자 산	출 자 · 투 자	현 금 · 예 금 등
석유사업기금	42,755	22,302	9,444	1,061	9,948
석탄육성기금	2,943	1,145	1,608		190
석탄안정기금	107	-	3	87	17
해외자원개발기금	1,040	998	-		42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197	112	-		85
합 계 (%)	47,042 (100%)	24,557 (52.2%)	11,056 (23.5%)	1,148 (2.4%)	10,281 (21.9%)

에너지 및 資源事業特別會計法(案)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
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자
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
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처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이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개발·비축·생산
·수송·저장·공급·절약이나 연구사업을 말한다.
2. "출연"이라 함은 정부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업기금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기관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라 함은 정부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투자”라 함은 정부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위하여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5. “용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조”라 함은 정부가 정부이외의 자가 행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재정상원조를 하기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7. 에너지·자원관련 5개기금”이라 함은 각각 이 법 시행일 이전의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육성기금,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안정기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기금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말한다.

8. “유가완충”이라 함은 상공자원부 장관이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업기금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이 회계는 상공자원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상공자원부 장관은 이 회계의 현물자산의 관리·운용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회계의 재원조성) ① 상공자원부 장관은 이 회계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과금을 징수한다.

1. 석유의 수입 또는 판매시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의 수입업자·판매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석유수

입업자 또는 정제업자가 과다하게 취득한 이윤중에서 징수하는 금액

3.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징수하는 금액

4. ① 석유 이외의 에너지자원 또는 광물자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원의 수입시에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 징수비율, 징수방법, 및 징수유예·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공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가격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함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된 석유수입비용의 기준가 차액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④ 상공자원부장관은 징수대상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납입금의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상공자원부장관은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부과금 및 가산금(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한 기간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세입) ① 이 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부과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예탁금 및 차입금
4. 정부가 이 회계를 통하여 출자한 기관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매각수입과 그 기관으로부터의 출자수입 및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5. 석유사업법 제13조의 2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6. 이 회계가 보유중인 자산의 매각 수입금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부과금 또는 수입금의 환급금은 예산회계법 제 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 회계의 세입금 계정에서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지급절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세출) ① 이 회계는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보조
3. 에너지 및 자원관련기관에의 출자 또는 출연
4. 에너지사업기금에의 출연
5.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이 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내용과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수입) ① 정부는 매회계년도마다 다음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당해 회계년도 방카씨유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제조단계에서의 B-C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율로 나눈금액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의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제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일시차입금) ① 회계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

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기업회계의 원칙) ① 이 회계는 필요시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예산회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①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년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잉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사업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

제12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회계는 유가완충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용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입세출외에 따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이를 조성한다.

1. 基金所管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용자원리금 수입
2.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3.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歲計剩餘金
4.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基金所管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입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용자 또는 채무보충
2. 유가완충을 위한 지출
3. 기금이 부담하여야 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제3항 제1호의 사업과 제2호의 지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

- ① 기금은 상공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탐사사업의 실패로 해당 사업에 소요된 기금의 용자금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용자원리금 상환액과 특별부담금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그 운용수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유가완충을 위한 자금의 운용은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유동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⑥ 기금의 관리·운용 및 용자금상환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임원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 직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담당임원 및 기금출납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차입)

-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유가완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 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

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령)

이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4회계년도 에너지·자원관련 5개기금 소관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1995 회계년도 에너지·자원관련 5개기금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한다.

제2조(채권·채무의 승계) ①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에너지·자원관련 5개기금의 자산과 부채는 이 법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

단, 용자사업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관련한 자산과 부채는 기금이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은 1994년말 현재기준의 장부가액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석유사업기금으로 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위하여 투자된 금액
2. 석유사업기금으로 부터 석유시추선사업을 위하여 용자된 금액과 그 이자액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2 제4항중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17조의 2내지 제17조의 9를 삭제한다.

② 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 제목과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며 제7호내지 제9호를 제5호내지 제7호로 한다.

제27조 제4항의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산업육성기금의”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로 한다.

제28조 제목과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본문과 각호 및 제3항 본문을 삭제하며 제3항 각호를 제1항 각호로 한다.

제28조(석탄산업육성지원)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28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의 “제3항 제2호의”를 “제1항 제2호의”로 하며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29조 제목과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 제2항 본문과 각호 및 제3항 본문을 삭제하며 제3항 각호를 각호로 한다.

제29조(석탄산업안정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 조업과 석탄광산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사용의 안정성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29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제30조 삭제한다.

제31조 제1항중 “제29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제29조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33조중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와 제2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을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 제2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중 “조성사업비의”를 삭제한다.

제39조의 3 제1항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기금에서”를 삭제한다.

제44조 제4호중 “제28조 제4항의 규정”을 “제28조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내지 제14조를 삭제한다.

④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51조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삭제한다.

제51조 내지 제54조를 삭제한다.

제69조 각호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71조 제목중 “기금의 운용과” 및 동조 제2항의 “기금의 운용계획과”를 삭제한다.

⑤ 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의 “500억원으로”를 “3조원으로”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이를 출자한다.

제4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 각호중 제2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운송·대여 및 판매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 및 자재 대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1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의 납입 ♠

나하나쯤 하지말고 내가먼저 에너지절약